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사탕수수 폴리페놀 추출물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식품원료 사탕수수 폴리페놀 추출물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한 사탕수수 폴리페놀 추출물 원료는 사탕수수(*Saccharum officinarum*) 제당 공정의 부산물인 당밀을 탈색, 탈당, 농축 등의 단계를 거쳐 얻은 것이다.
3. 전 항에서 얻은 사탕수수 폴리페놀 추출물 원료의 폴리페놀 함량은 16%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 일일 섭취제한량은 폴리페놀로 계산하여 400mg이다.